| 산업통상자원부<br>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도자료** | 여러분의 평창입니다 |
|---|---|---|

**2017년 7월 18일(화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배포즉시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7. 7. 17.(월) | 담당부서 | 불공정무역조사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정병락 과장(044-203-5880) | 담 당 자 | 안성훈 주무관(044-203-5885) |

# 무역위,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해 6개월 간 수출중지 명령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신희택)는 '17.7.17.(월) 제367차 회의를 열어 국내 S사(중소기업)가 국내 T사(중소기업)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교환렌즈*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,

* 교환렌즈란 카메라 부속장치의 하나로서 교환가능한 촬영용 렌즈를 의미

○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·수출한 행위는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,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.

□ 이번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는 '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를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'14.8.7. 설립한 회사로다.

○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 비밀을 사용해 초점거리 15㎜, 최대조리개값 2.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.

○ 이에 따라, 무역위원회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했다.

□ 무역위원회는 '16.10.4.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, 현지조사, 기술설명회,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 만에 판정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.

* 무역위원회 조사에 앞서 제기된 T사 관련자들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소송('15.9.23. 기소)과 S사가 T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·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('16.7.29. 제소)은 여전히 계속 중

□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·상표·디자인·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 중지·폐기명령 같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으며,

○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 판정은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.

【붙임】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안성훈 주무관(☎044-203-58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** | **교환렌즈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결과 요약**

## □ 조사개요

o 조사건명 : 교환렌즈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

o 조사번호 : 구제 4-1-2016-11

o 신청인 : S사('15년 기준 매출액 572억원)

o 피신청인 : T사('14. 8월 설립)

o 조사대상물품 : 교환렌즈 "f=15㎜ F2.4"(초점거리 15㎜, 최대조리개값 2.4) 제품

- HS 번호 : 9002.11.1000 (사진기용의 대물렌즈), 9002.20.1000 (사진기용의 필터), 9002.90.1000 (기타 사진기용의 것)

o 조사대상기간 : '14.8.7. ~ '16.9.30.

o 조사개시결정일 : '16.10.4.

## □ 조사경과

o 조사신청서접수('16.8.10), 조사개시결정('16.10.4)

o 당사자회의('16.2.15), 현지조사('17.4-5월), 기술설명회('17.6.2), 전문가감정('17.6월)

## □ 조사결과

o 피신청인은 '16.7.14. 이래 계속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교환렌즈를 생산하여 폴란드 등지에 수출하였는바,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

> "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)**"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,
> -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

o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(시정조치 명령, 과징금 부과) 대상임